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50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7일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

	(가)		(㎡)	
	700	700	46,006	
	755	755	47,356	

2. 권리산정기준일 : 2022. 4. 4.

3. 지정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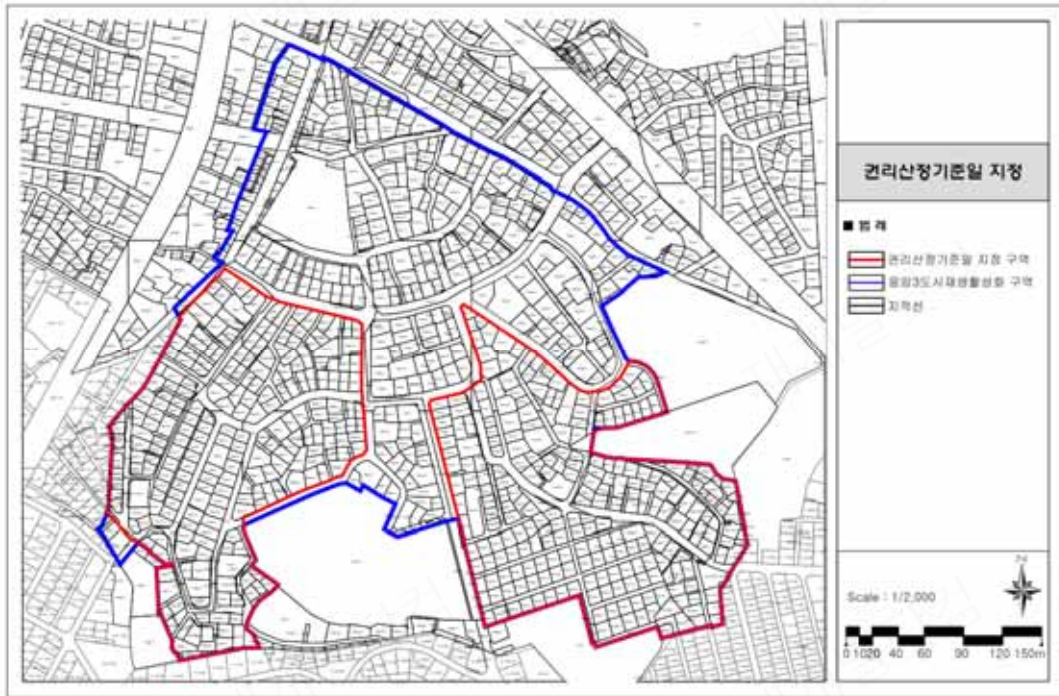
- 정비구역 지정·고시 전에 투기세력 등의 유입 사전 차단으로,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 최소화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름
- 단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(추가 편입 필지 포함)에 한해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

5. 관계 도면

○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구역



6. 문의처 : 서울특별시(주거재생과, 02-2133-7182)
 은평구(주거재생과, 02-351-7360)